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81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임호선 · 윤준병 · 송옥주
임미애 · 장종태 · 강준현
복기왕 · 김남희 · 고민정
이상식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의 치명률 · 전파속도 · 경제적 피해 규모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 · H7)의 상향 조정, 블루팅병 및 림프스킨병의 하향 조정 등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단순 열거식 분류 체계를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가축에 감염되는 질병 중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발생 상황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서”로, “가축전염병을 말한다”를 “가축전염병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 및 피해가 우려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 농장 및 주변 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가. 우역(牛疫)
- 나. 우폐역(牛肺疫)
- 다. 구제역(口蹄疫)
- 라. 가성우역(假性牛疫)
- 마. 리프트게곡열
- 바. 양두
- 사.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 아프리카마역(馬疫)

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 돼지열병

카. 돼지수포병(水疱病)

타. 뉴캐슬병

파.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4. “제2종 가축전염병”이란 치명률 또는 전파 속도가 상당하여 주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 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탄저(炭疽)

나. 브루셀라병

다. 결핵병(結核病)

라. 요네병

마.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바. 럼피스킨병

사. 블루텅병

아. 큐열

자. 돼지오제스키병

차. 돼지일본뇌염

카.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타. 비저(鼻疽)

파. 말전염성빈혈

하.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거. 구역(媾疫)

너.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더. 동부말뇌염(腦炎)

러. 서부말뇌염

머. 베네수엘라말뇌염

버. 저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

서. 추백리(雛白痢: 병아리 흰설사병)

어. 가금(家禽)티푸스

저. 가금콜레라

처. 광견병(狂犬病)

커.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5. “제3종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 가축전염병 및 제2종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소유행열

나. 소아카바네병

다. 기종저(氣腫疽)

라. 돼지테스코바이러스뇌척수염

마. 닭마이코플라스마병

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는 제외한다)

사. 부저병(腐蛆病)

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u>가축전염병</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가축에 감염되는 질병 중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발생 상황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서</u> ----- -- <u>가축전염병으로 구분한다.</u> <u><삭 제></u>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u>牛疫</u>), 우폐역(<u>牛肺疫</u>), 구제역(<u>口蹄疫</u>), 가성우역(<u>假性牛疫</u>), 블루텅병, 리프트게곡열, 럽피스킨병, 양두(<u>羊痘</u>), 수포성구내염(<u>水疱性口內炎</u>), 아프리카마역(<u>馬疫</u>),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u>水疱病</u>), 뉴캐슬병, 고병원성조류(<u>鳥類</u>)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u>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

<삭 제>

(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 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

<삭 제>

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크플라스마병,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腐蛆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립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
축의 전염성 질병

<신 설>

3.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치
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
라 대규모 확산 및 피해가 우
려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발
생 농장 및 주변 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우역(牛疫)

나. 우폐역(牛肺疫)

다. 구제역(口蹄疫)

라. 가성우역(假性牛疫)

마. 리프트게곡열

바. 양두

사.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 아프리카마역(馬疫)

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 돼지열병

카. 돼지수포병(水疱病)

타. 뉴캐슬병

파.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
으로서 농립축산식품부령으

<신 설>

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4. “제2종 가축전염병”이란 치명률 또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하여 주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 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탄저(炭疽)

나. 브루셀라병

다. 결핵병(結核病)

라. 요네병

마.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바. 림프스킨병

사. 블루텅병

아. 큐열

자. 돼지오제스키병

차. 돼지일본뇌염

카.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타. 비저(鼻疽)

파. 말전염성빈혈

하.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거. 구역(溝疫)

너.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더. 동부말뇌염(腦炎)

<신 설>

러. 서부말뇌염

머. 베네수엘라말뇌염

버. 저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

서.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어. 가금(家禽)티푸스

저. 가금콜레라

처. 광견병(狂犬病)

커. 사슴만성소모성 질병(慢性
消耗性疾病)

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5. “제3종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
가축전염병 및 제2종 가축전염
병 외의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
한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소유행열

나. 소아카바네병

다. 기종저(氣腫疽)

라. 돼지테스코바이러스뇌척수염

마. 닭마이코플라스마병

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u>3.</u> ~ <u>8.</u> (생 략)	<u>(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는 제외한다)</u> <u>사. 부저병(腐蛆病)</u> <u>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u> <u>6.</u> ~ <u>11.</u>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